

#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5. 3. 25(금)  
산업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3월 10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3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2005. 3. 2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 가. 개정이유

-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등을 위하여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 위원회 회의소집 사항에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외에 “회의소집 없이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를 추가함(안 제6조).
-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 을 간사 2인과 서기 2인 으 로 변경함(안 제8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규하)

-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제명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 제2조에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개정하였으며,
- 제5조는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로 개정하였고,
- 제5조 제2호 “개별공시지가”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로 개정하였으며,

- 제5조 제3호에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 제5조 제4호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 제5조 제5호 “기타 토지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제9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 제5조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신설하였으며,
- 제6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이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이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였고,
- 제8조 (간사 등) 제1항 위원회에 “간사는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는 2인과 서기 2인을 둔다”로 개정하였으며,
- 제8조 제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업무담당주사”를 “해당부서 담당과의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일부수정의결(만장일치)

##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의 6인 제출

### 나. 수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 조문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

### 다. 수정 주요골자

- 조문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조항 신설(안 제2조 제2항)
  - 삽입 내용 : 제2조 ②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주택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8. 기타사항 : 없 음

- ※ 첨부 : 1.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이천시조례 제 호

###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주택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b>②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주택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b></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